

부산지방법원 2021. 10. 7 선고 2021가단3178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2.

판 결 선 고 2021. 10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피고가 2020. 11. 23. C와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8가소255468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. 4. 26. 'C는 원고에게 7,439,941원과 그 중 4,684,086원에 대한 2018. 6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.4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9. 5. 24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D는 2020. 11. 23.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와 C가 1/2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.

다. 피고와 C는 2020. 11. 23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한 다음 2021. 3. 2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날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1) 원고

C는 D가 사망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

D는 2019. 12. 7. 자필유언장의 작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므로,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는 사망 전인 2019. 12. 7. 자필로 '부산

E건물(F호, 내 딸 B이가 다 관리해서 오빠(C) 살게 뒷받침해 주고 집은 주면 안된다. 내 집은 몇 분이 들어도 내 딸 B 앞으로 해놓고 오빠(C)는 죽을 때까지 이용만(살 데 없으면) 할 것, 위의 기재한 것은 내 유서나 마찬가지다, 꼭 이행할 것, 2019. 12. 7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(F호), D, (전화번호 1 생략),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문서는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유언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고 판단되므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피고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금덕희

부동산의 표시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, 빌라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
1층 내지 7층 99.24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45.8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<input type="text"/> | 대 | 132㎡ |
| 2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| 대 | 4㎡ |

(대지권의 비율)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소유권대지권 | 1320분의 158 |
| 2. 소유권대지권 | 400분의 48 |

